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진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과잉 행정 방지를 위한 적정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의 2, 별표 2)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신설(법제처 권고안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1번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

<신 설>	제12조의2(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0000.00.00.>
<신 설>	[별표 3]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신설 0000.00.00.> ※ 별첨 참고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별표 2] <신설 2018.1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별표 2] <신설 2018.12.4.>, <개정 0000.00.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좌동)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외교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	----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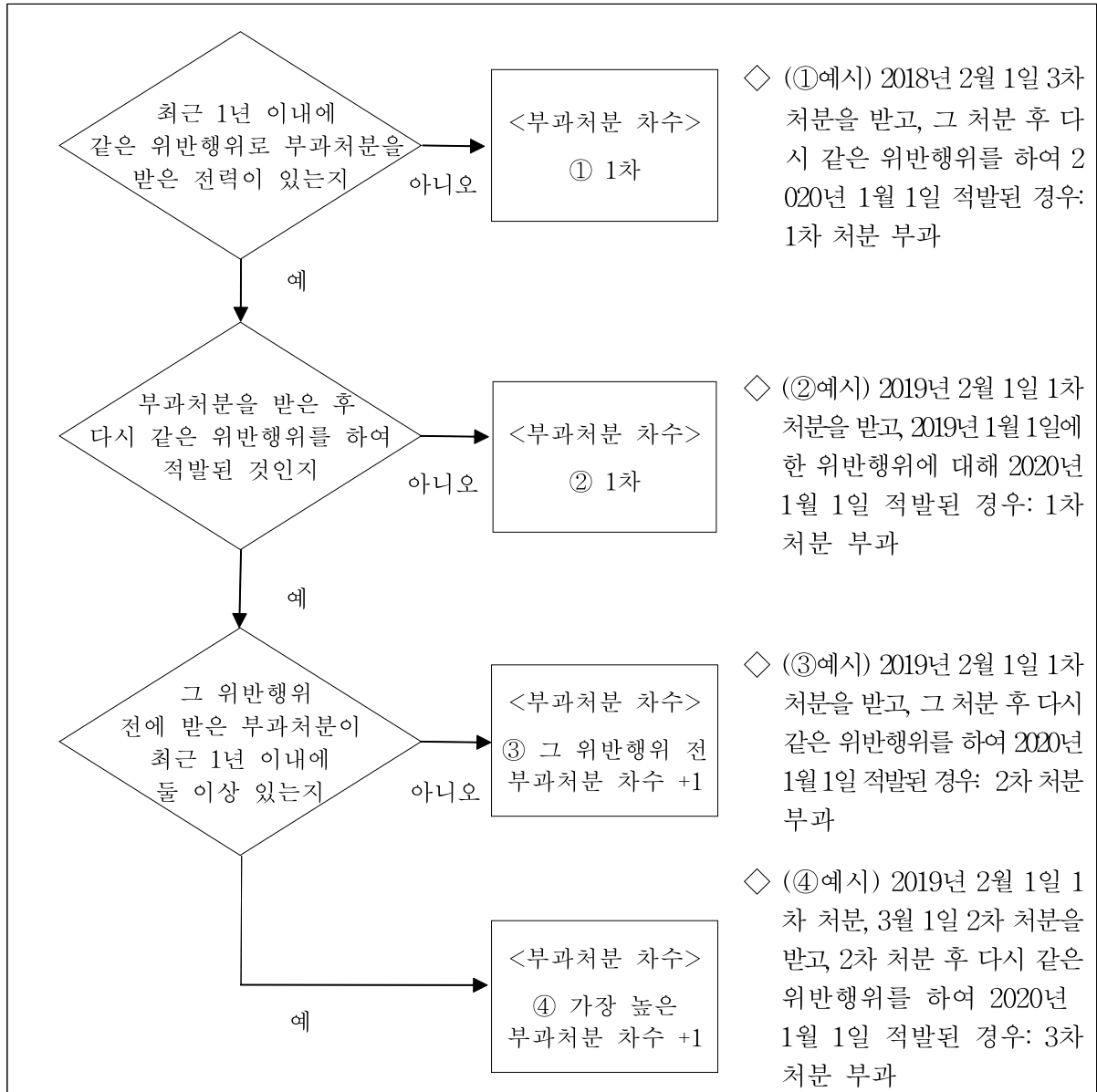
다. (좌동)

2. 개별기준 (좌동)

	법조문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 조의2제 1항	50	100	200
나.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 조의2제 1항	25	50	100

[별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3]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12조의2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연 락 처	(02) 2100 - 8104